

최종 승인일	2025. 6. 20.
작성부서	구매1팀

책임 있는 광물 정책
(Responsible Minerals Policy)

Rev.0

제1장. 총칙

제1조. 목적

본 정책의 목적은 OECD 실사 가이드라인(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 Affected and High-Risk Areas), 「미국 도드-프랭크법」, 「EU 분쟁/책임 광물 규칙」 등 분쟁/책임 광물 관련 글로벌 규제가 제시한 인권 존중 및 환경 보호 원칙에 따라 채굴된 광물만을 사용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기본 원칙과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내전 중에 있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하여 미얀마 등 군벌, 반군단체들의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3TG 광물인 주석(Tin), 탄탈륨(Tantalum), 텅스텐(Tungsten), 금(Gold)과 같은 분쟁광물 외에도 코발트, 니켈, 알루미늄 등 채굴과정에서 인권과 환경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책임광물의 사용을 금지하여 분쟁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회사의 자금을 차단합니다. (주)세아제강(이하 '회사')는 분쟁책임 광물 관리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약속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제2조. 적용범위

회사는 본 정책을 토대로 회사의 기업 활동에 포함된 전 임직원, 사업장 및 자회사를 포함하여 협력회사, 공급업체, 서비스업체 등 기업 활동 전 과정의 모든 파트너에게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.

제3조. 기본 원칙

회사는 협력회사들이 제품에 포함된 분쟁/책임 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과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,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, 윤리 위반,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·환경적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하며,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, 윤리 위반,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 인증 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래의 사항들을 권고합니다.

- ① 회사는 회사의 제품에 포함되는 모든 광물의 채굴과정에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등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,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광물이 자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.
- ② OECD에서 제시한 실사 가이드를 바탕으로 분쟁/책임 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

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/책임 광물 업무 프로세스 및 분쟁/책임 광물 조달 정책을 수립하고, 책임있는 기업 연합(Responsible Business Alliance, RBA)의 책임광물 이니셔티브(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, RMI)가 추진하는 분쟁/책임 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.

- ③ 또한, 회사의 업스트림 범주에 포함된 협력회사들이 '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(Conflict-Free Smelter program)' 및 '책임광물보증절차(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, RMAP)'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광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합니다.
- ④ 이를 위해 RMI에서 제공하는 분쟁 및 책임 광물 보고양식인 CMRT(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)와 EMRT(Extended Minerals Reporting Template), 또는 PRT(Pilot Reporting Template) 등을 활용해 모든 협력회사의 분쟁 및 책임 광물 현황 정보와 공급망 내 제련소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하고자 노력합니다.
- ⑤ 회사는 협력회사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3TGs와 코발트(Cobalt) 등, 분쟁/책임 광물과 책임광물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외부 공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여 책임있는 소싱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.

제2장. 분쟁 및 책임 광물 관리 체계

제4조. 회사의 책임

회사는 책임 있는 자원 조달을 위해 'OECD 실사 가이드스'가 제시하는 5단계를 기반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광물이 채굴되도록 아래와 같이 관리합니다.

- ① 분쟁 또는 고위험지역에서 채굴된 광물과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데이터를 관리합니다.
- ② 분쟁 또는 고위험지역에서 광물 채굴, 거래, 수출 등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 및 평가합니다.
- ③ 확인된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, 이행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관리 체계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.
- ④ 분쟁 또는 고위험지역 내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제련소를 식별하여 향후 실사와 검증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- ⑤ 실사결과 중 공급망 내 Risk 및 개선 필요 사항이 파악되면 공급사에 이를 이행하도록 요청

하며, 공급사의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합니다.

제5조. 협력회사의 분쟁/책임 광물 관련 권고 사항

회사는 자사의 분쟁/책임 광물 정책이 공급사슬 전역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 회사가 국제사회 및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별 분쟁/책임 광물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, 당사의 분쟁/책임 광물 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협력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.

- ① 분쟁/책임 광물 정책 및 절차 수립: 협력회사는 당사에 납품하는 제품 중 콩고민주공화국, 미얀마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의 이익에 기여하는 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/책임 광물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당사에 보고합니다.
- ② 공급제품 원산지 확인: 협력회사는 자체 공급망 내 분쟁 및 책임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파악합니다.
- ③ 분쟁/책임 광물 사용보고 질의서 적시 제출: 협력회사는 당사가 요청하는 RMI의 분쟁/책임 광물보고서(CMRT, EMRT)에 대한 요청을 받을 경우, 해당 내용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여 분쟁/책임광물보고서(CMRT, EMRT)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. 단, 분쟁/책임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, 이에 대한 서면 확인을 당사가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협력회사는 이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합니다.
- ④ 통지의무 이행: 협력회사는 회사와의 거래 관계 시 1) 분쟁/책임 광물이 포함되었음을 인지하게 된 경우, 2) 분쟁/책임 광물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음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 발견 시, 3) 책임광물 관련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경우, 4) 책임광물 관련 이슈가 있음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 발견 시 즉시 회사에 통지합니다.
- ⑤ 시정조치에 대한 적시 수행: 협력회사는 공급망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, 적시에 시정해야 합니다. 만약 당사가 1) 분쟁/책임 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, 2) 협력회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, 그리고 3) 협력회사의 공급망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, 당사는 해당 협력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가 입게 될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.

부칙

본 정책은 2025. 6. 20. 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.